

# 기안용지

문서번호 등록번호	제수 132	전형부정 4 조 9 항 전형사상 2 장
처리기간	5~10월	<span style="font-size: 2em;">10.23</span> <span style="font-size: 1em;">1984. 10. 23</span> <span style="font-size: 1em;">국회수석장</span>
시행일자	94. 10.	
보존연한		
보 조 기 관	상화수국장 건설 치수과장 충진 용지국장	<span style="font-size: 1em;">법무감사관</span> <span style="font-size: 1em;">법무감사관</span>
기안책임자	유병돈	<span style="font-size: 1em;">유병돈</span> <span style="font-size: 1em;">34. 10. 23</span> <span style="font-size: 1em;">장경</span>
경 우 수 신 찰 조	구안참조	<span style="font-size: 1em;">공고제</span> <span style="font-size: 1em;">646호</span> <span style="font-size: 1em;">84. 10. 23</span>
제 목	서울특별시 차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 제 121 )		
수신 내보내기지		
<p>1. 서울특별시 차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 및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주권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개정 조례 안 입법 예고를 하고자 합니다.</p>		
정서		
<p>2. 예고사항 : 서울특별시 차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p>		
입법예고		
<p>3. 예고기간 : 1984. 10. 26 ~ 1984. 11. 21 ( 20 일간 )</p>		
관인		
<p>4. 예고방법 [ 공보관세 정보 기자회 ]</p>		
[ 시청 및 구구청 고시판 기사 ]		
<p>첨부 서울특별시 차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1부. 2부.</p>		
발송		
<p>( 제 22 )</p>		
<p>수신 공보관 1234</p>		
59		

1205-25(2-1)A(A)  
1981. 12. 18승인

정직 질서 창조

190mm × 268mm (인쇄용지 2급 60g/m<sup>2</sup>)  
조 말 청(1,500,000매 인쇄)

제2 통고

1. 서울특별시 가천 병원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법적인 서울특별시 가천검증료 등 징수고지 및 결정안의 이행여부를 청탁 시보에  
기재 의뢰 드오니 조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가천 검증료 등 징수고지 결정안 입법 예고문 1부.

( 제 3간 )

수신 벽드 담당관

제3 통고

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보관  
에 기재 법적의 입법예고안을 시보에 기재 의뢰 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가천 검증료 등 징수고지 결정안 입법 예고문 1부.

( 제 4간 )

수신 구 구청장

참조 건설관리과장

제4 통고

1. 서울특별시 가천 검증료 등 징수고지로 개정함에 있어 조례  
개정 주요 내용 및 취지를 티리 시민에게 알리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구구청 게시판에 게시토록 기시  
하니 게시하여 시책 소방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할것.  
첨부 서울특별시 가천 검증료 등 징수고지 결정안 입법 예고문 1부.



60

서울특별시 공고 제 오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안 개정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차치 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내용과 같이 공고 한다.

34. 10. 26

### 서    울    특    별    시    장

1. 차지법 ~~부칙~~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안
2. 개정의 주요 내용 및 취지
  - 가.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준칙이 되는 관설부의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당시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 차례는 것임.
  - 나. 점용료 등 물액 산정기준 (제 2조)  
점용일수가 10일 이하는 물액의 반액을 징수한 현행 규정을 관설부 준칙에 의거 이를 점용일수가 15일 이하는 2분의 1율로 15일 초과는 1율로 개정차례는 것임.

다. 적용료등의 감면 (제 2조)

1984. 10. 27.  
부수증

총용 공역 특적으로 한 베어리 사업과 개해로연한 감면 규정은 있으나 감면 대상에 따른 감면율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행 규정을 관설부 준칙에 따라 감면대상 범 감면율을 규정화하는 것임.

라. 적용료등의 징수 (제 4조)

~~작용료를 일시액전납한 현행~~ 규정을 관설부 준칙에 따라  
최저년도별로 구분징수 하되 3개년도분은 3가지,  
그 이후 낸도분은 해당년도 3월이내 징수도록 개정하자는  
것임.

마. 증감징수의 규정의 폐지

고통의 편부 기박 사정에 의하여 2배 또는 2분의 1  
범위내에서 증감징수 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  
(제 2조 단서)

3. 의견제출

이 조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84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5점지를 써워서각석)를 서울특별시장(총조 치수과장)  
에게 제출하여 조사 기 바랍니다.

부록 7

- 1) 예고 사용에 대한 학부별 의견 (학부 일부와 그 의견)
- 2) 주소,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4. 기타

- \* 검증료 등 산정기준 등 기타 상세한 사용은 서술 별표  
    지수 과 (342 - 3917, - 33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